##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39

발의연월일: 2021. 8. 31.

발 의 자:정태호·강득구·김교흥

박 정・송옥주・윤건영

이성만 • 이수진 • 조승래

홍성국 · 홍익표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라 불리는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

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소상공인에 한정한다"를 "소상공인에 한정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폐업을 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로, "2021년 12 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①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u>소상공인에 한</u>	소상공인에 한정하
<u>정한다</u> )으로부터 2020년 1월 1	고,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폐업
일부터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을 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	<u>2022년 12월 31일</u>
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